

# 2026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 실시안내

## 1. 교육개요

2024년 10월 25일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. 그 외 공동주택도 필요에 따라 구성 가능합니다.

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, 선거관리위원,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게 됩니다.

이에 국토교통부는 고시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(대한주택관리사협회)의 교육을 통해 층간소음의 예방 및 분쟁조정 역할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층간소음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와 실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## 2.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 교육 기본내용

- **교육명** :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  
(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)
- **교육대상** :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
- **과정유형** : 온라인 교육
- **교육비용** : 14,000원
- **수료기준** : 진도율 90% 교육 이수자
- **학습기간** : 매월
- **교육시간** : 4시간/년
- **교육기관** : 대한주택관리사협회(2024.11.12. 고시 지정단체)
- **환불기준** : 교육기간 내 미수료자는 환불가능,  
교육기간 이후 수료여부 관계없이 환불불가
- **교육접수 및 교육기간** : 매월 20일까지 접수, 말일까지 교육

## ○ 교육과정

과 목	차 시	내 용
1강. 층간소음 현황과 공동주택 층간소음	1~3차	I. 층간소음 뉴스(최신 경향) II. 공동주택과 층간소음(이해) III. 층간소음 분쟁 해결 절차와 올바른 방향
2강.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실무 심화	4~6차	I. 층간소음의 조사 및 측정 II. 분쟁 조정 방법 및 상담 III.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분쟁 미해결시 방법
3강. 층간소음 분쟁조정 해결 및 우수현장 사례	7~8차	I. 층간소음 분쟁조정 해결 사례 II.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우수사례

## 3. 교육신청 방법

-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(es.khma.org)에 접속
  - ① 홈페이지 회원가입
  - ② “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” 신청
  - ③ 교육비 입금
  - ④ 교육수강
- 입금기한
  - 교육 신청 후 2일 후 18:00까지
- 취소 및 환불
  - 입금기한 내 미입금 시 자동취소
  - 교육접수 후 교육기간 중 환불가능(교육기간 종료 후 환불불가)
- 이수증 발급
  - 나의정보 > 교육이수정보에서 발급
  - 교육 수료기준 달성 후 익일(영업일 기준) 12:00~ 발급

## 4. 교육문의

-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콜센터 1577-0337(교육 3번)